◎ 오스트리아 - 코로나19 조치 및 이자 제한 규정 법안 의회 제출

■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의 납세자 지원을 위한 법안 초안이 2020년 11월 20일에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1)]**

○ 요식업, 문화 및 출판 부문에 5%의 할인된 VAT 세율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2022년 말까지 코로나19 진단 및 백신에 대한 VAT를 면제함

○ 2021년 1월 1일부터 자전거, 신발, 가죽제품 및 의류 관련 수리 서비스에 10% 할인된 VAT 세율을 적용함

○ 이미 승인된 세금 유예 및 연체 벌금의 면제기한을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함

○ 코로나19로 인한 통근비용에 대한 공제 조치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적용됨

○ 코로나19 관련 문서에 대한 인지세가 면제됨

■ **또한, 해당 법안에는 EU의 조세회피 방지 지침(Anti-Tax Avoidance Directive: ATAD) 2016/1164 제4조의 시행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300만유로[2)]를 초과하는 기업의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 한도를 EBITDA[3)]의 최대 30%까지로 제한하며, 본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 기존에는 EBITDA와 관련하여 이자비용의 세액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음[4)]

<자료 수집 및 정리: 변정윤 연구원>

1) IBFD, Austrian Parliament Considers Draft Bill on COVID-19 Tax Measures (Nov 25, 2020)
2) 2021년 1월 4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9억 7,751만원임.
3) EBITDA(Earg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는 이자비용, 세금, 감가상각비 차감전 순이익을 의미함.
4) EY, Austria to enact new interest limitation rule in accordance with EU ATAD as of 2021, https://www.ey.com/en_gl/tax-alerts/austria-to-enact-new-interest-limitation-rule-in-accordance-with-eu-atad-as-of-2021#:~:text=According%20to%20the%20interest%20limitation,including%20those%20with%20non%2Daffiliates, 검색일자: 2020. 12. 28.